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95호 2022. 9. 8.(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186호 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15)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2022-18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3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242호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95호

사천시 고시 제2022-186호

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고시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9. 8.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배경
 -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장래 사천시의 제반 도로교통현황 및 장래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1년 ~ 2025년
 - 공간적 범위: 사천시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 계획의 성격
 - 「도로법」에 의한 사천시 시도 정비에 관한 법정계획
 - 시도 정비의 방향제시와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

사 천 시 공 보

제795호

2. 계획의 목표

- 사천시의 도시여건을 고려하여 사천시의 모든 도로에 대한 기능정비
-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가로망을 구성
- 생활의 편의성 제고
- 환경과 조화되는 교통시설물 구축

3. 주요내용

- 도로망의 기능별 정비
- 지역 산업·경제 활력주는 도로건설, 쾌적·편리·안전한 도로관리
 - 도로이용 효율의 극대화
 - 교통소통의 원활화
 - 친환경적 도로건설 및 안전성 확보
 - 미래지향적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 도로계획의 지표 설정
 - 도로계획의 지표 산정
- 장래 도로망체계 구상 및 추진전략
 - 장래 도로망 체계 구상
 - 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
- 도로망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대안 제시
- 도로의 관리 및 도로자산의 활용 및 운용방안

4.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서류는 사천시 도로과(055-831-337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끝.

사 천 시 공 보

제795호

사천시 고시 제2022-18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7-196호(2017.10.26.)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0-302호(2020.09.10.)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 고시된 아래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사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지역

사 업 명	위 치	면적(m ²)	용도지역	비고
(가칭)사천항공산업 단지 조성사업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구호리 일원	1,035,410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최초지정일 2017.9.7.

2. 해제사유: 개발사업 타당성 미확보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도래로 인함

3. 해제일시: 해제 고시일로부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산업입지과(055-831-3465) 및 도시과(055-831-31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95호

위 치 도

- 사업명: (가칭) 사천항공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구호리 일원



사천시공보

제795호



사 천 시 공 보

제795호

사천시 공고 제2022-1242호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2022.6.22.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9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01, FAX: 831-6022)

사 천 시 공 보

제79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95호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2022.6.22.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95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 ~ 2022. 9.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9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를 “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를 “법 제2조” 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를 “관하여 다른 조례에” 로, “없으면 이 조례로” 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항” 을 “법 제3조제4항”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5호

제9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사회복지기관</u>”이란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p> <p>3. “<u>사회복지서비스</u>”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4. “<u>사회복지사 등</u>”이란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u>사천시</u>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사회복지기관</u>”이란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4. ----- <u>법 제2조</u>----- ----- ----- -----.</p> <p>제3조(적용대상) ----- <u>사천시</u>(이하 “<u>시</u>”라 한다)----- -----</p>

등 (이하 “사회복지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관하여 다른 조례에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

제8조(실태조사) ① ----- 법 제3조 제4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천시에 두

는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관 련 법 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